

# 벨라루씨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투자실현과 호상 보호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벨라루씨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아래부터 《체약쌍방》  
이라 한다.) 는 벨라루씨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호상  
유익한 경제적협조를 계속 발전시킬것을 희망하면서 체약상대방령토에서  
체약일방투자가들의 투자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정 의

본 협정에서 인용한 전문술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투자가》란 체약일방의 법에 따라 해당한 형태로 창설 혹은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와 협회, 기업들을 포함한 법인들을 말하며 또한  
체약일방의 공민들로서 체약상대방령토에 투자하는 임의의 자연인들이다.

2. 《투자》란 체약일방투자가의 소유로서 체약상대방의 법에 상응하게  
체약상대방령토에 투자하는 임의의 형태의 재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의  
것들이 예외없이 포함된다.

- ㄱ)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 전당권들과 같은 임의의 기타 재산권;
- ㄴ) 주권, 출자몫, 채권과 임의의 형태의 기타 기업참가형식들;

- ㄷ) 화폐자금에 대한 청구권 혹은 기타 경제적가치를 가진 계약에 따르는 임의의 리행청구권;
- ㄹ) 지적재산권 (저작권,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공업도안, 상표 혹은 봉사표식, 상호), 기술비결;
- ㅁ) 자연부원의 탐사, 채취 혹은 개발권을 포함한 기업리권 또한 법, 협정 또는 법에 따른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업활동실현에 대한 기타 모든 리권들,

3. 《수익금》 이란 그 어떠한 투자로 산생된 금액을 말하며 특히 리윤, 리자, 리익배당금, 수수료, 기술사용료, 기타 보상금이 예외없이 포함된다.

#### 4. 《령역》 이란:

벨라루씨공화국에 관해서는 벨라루씨공화국이 자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벨라루씨공화국의 영토와 영공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자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속경제수역, 대륙붕을 의미한다.

5. 《몰수》란 체약일방의 당국이 국가 혹은 사회적리익의 견지에서 체약상대방투자가의 투자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실시한 몰수를 의미하며 이것은 본 협정의 의미에서 법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지 않는다.

6. 《법》이란 체약쌍방에 관하여 해당 체약일방의 법을 말한다.

## 제 2 조 투자실현촉진 및 보호

1. 체약쌍방은 자기의 영역에서 체약상대방의 투자들에게 투자실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체약일방의 법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체약일방의 투자들이 실현한 투자는 본 협정에 준하여 체약상대방의 영역에서 전면적인 법적보호를 확고히 받는다.

## 제 3 조 투자에 대한 대우

1. 체약쌍방은 자기의 영역에서 체약상대방의 투자들에게 허용한 투자에 대하여 자기 나라의 투자가 혹은 임의의 제3국투자가의 투자와 그와 관련된 활동에 제공하는 대우에 못지 않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한다.
2. 체약일방은 자기의 영역에서 체약상대방 투자들의 투자의 관리, 처분, 유지, 리용에 장애를 조성하는 차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제 4 조 협외조건

1. 체약일방은 자기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들의 활동이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분야와 범위에서는 임의의 제3국 투자들과 같이 체약상대방의 투자들에게 차별하지 않는 원칙에서 협외조치를 취하거나 그대로 둘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체약쌍방의 투자들은 임의의 제3국의 투자들에게 제공하는 대우에 못지 않는 유리한 대우제공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들은 체약

상방중 어느 일방이 체약상대방의 투자가들에게 다음의 경우와 관련된  
임의의 대우나 유리점, 특혜와 특전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ㄱ) 체약상방중 일방이 임의의 현존 혹은 앞으로 가능한 자유무역협정, 관세 또는 경제동맹, 혹은 다른 류사한 지역단체의 성원이거나 앞으로 되는 경우;
- ㄴ) 전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과세와 관련한 임의의 국제조약 또는 합의서.

## 제 5 조 손해보상

1. 체약상대방은 자기의 영토에서 전쟁 혹은 기타 무장충돌, 혁명, 국가비상사태, 폭동, 소요, 무질서로 하여 투자에서 손해를 본 체약일방의 투자가들에게 자기의 투자가들 혹은 임의의 제3국 투자가들에게 원상회복, 손해배상, 보상이나 기타 문제조정에서 제공하는 대우에 못지 않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한다.

2. 사회적 리익에서 그리고 비차별적이며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등가보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일방투자가의 투자는 체약상대방의 영역에서 몰수 혹은 몰수와 같은 기타 조치 (아래로부터는 몰수라 한다.)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이 보상액은 몰수하기 직전 실지 몰수된 투자액의 가치와 같으며 초기투자가 실현된 화폐로 3개월안에 지불된다.

투자가 실현된 그 체약상대방의 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불되기전까지의 리자가 계산된다.

3. 체약상대방의 영역에서 손해를 입은 체약일방의 투자가는 본 조항에 지적된 원칙에 준하여 체약상대방의 재판소 혹은 권한있는 기관에 사건의 실무적심의와 해당한 투자의 평가분석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 6 조 자유로운 송금

1. 체약일방은 체약상대방의 투자가에게 해당한 세금 및 료금납부후 투자와 관련한 지불금을 해외로 제한없이 송금하는것을 담보한다.

특히 ;

- ㄱ) 본 협정의 1조 3항에 지적한 수익금
- ㄴ) 체약쌍방이 투자로 인정한 채무상환금
- ㄷ) 투자관리에 필요한 지불금
- ㄹ) 투자유지 혹은 확대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금
- ㅁ) 투자의 부분적 혹은 완전청산으로 얻는 수익금
- ㅂ) 본 협정의 5조에 지적된 보상금

2. 송금은 환률조정에 대한 현행 법규정에 준하여 송금당일 환률에 따라 자유전환성화폐로 지체없이 실현된다.

## 제 7 조 보험대위

체약쌍방중 어느 일방이 체약상대방령토에서 자기측 투자가가 실현한 투자와 관련하여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그 어떤 재정적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체약일방이 이 담보에 따라 투자가에게 지불하였다면 체약상대방은 보험대위원칙에 준한 체약일방의 권리를 인정한다.

## 제 8 조 체약일방과 체약상대방 투자가사이의 분쟁해결

1. 체약일방과 체약상대방 투자가사이의 투자와 관련한 분쟁들은 친선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2. 만일 분쟁해결에 대한 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분쟁이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은 다음의 기관들의 심의에 제기될수 있다.

ㄱ) 투자가 실현된 체약일방의 권한있는 재판소 혹은 중재재판소

ㄴ)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조직되어 활동하는 《특별》 중재재판소

림시중재재판소 소장은 체약쌍방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는 제3국의 공민이여야 한다.

3.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쌍방에게 최종적이며 의무적이다.

## 제 9 조 체약쌍방사이의 분쟁해결

1. 본 협정의 규정들을 해석 또는 적용하는데서 발생하는 체약쌍방사이의 분쟁은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2. 만일 체약쌍방이 분쟁이 발생하여 6개월내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체약쌍방중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중재재판소의 심의에 제기한다.

중재재판소는 3명으로 구성한다. 체약쌍방은 각각 1명의 중재원을 임명하며 이 2명의 중재원은 체약쌍방이 외교관계를 가진 3국의 공민을 소장으로 선출한다.

3. 체약쌍방중 어느 일방이 분쟁을 중재에 넘길데 대한 자기의 의향을 표시한 때로부터 2개월기간에 체약상대방이 자기의 중재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과 관련한 체약일방의 제의에 답을 주지 않는 경우 그 중재원은 체약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이 임명한다.

4. 쌍방의 중재원들이 임명된 날부터 2개월내에 소장선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소장은 체약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임명한다.

5. 이 조 3항과 4항에 예견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우에서 지적한 기능을 수행할수 없거나 그가 체약일방의 공민인 경우 부소장이 임명한다.

부소장도 임명할수 없거나 그 역시 체약일방의 공민인 경우 임명은 체약쌍방의 공민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순위상 다음가는 성원이 임명한다.

소장임명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날부터 3개월안에 이루어진다.

6. 본 조항에 준하여 조직된 중재재판소는 다수 가결로 결정을 채택한다.

이 결정은 쌍방에게 의무적이다.

쌍방은 자기가 임명한 중재원의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다.

소장의 활동과 관련한 비용과 기타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재판소는 자기의 사업규칙을 규정한다.

#### 제 10조 본 협정의 효력발생전에 실현된 투자

이 협정은 또한 본 협정의 효력발생전에 체약일방의 투자가들이 체약상대방의 법에 따라 체약상대방 영토에 실현한 모든 투자들에 적용된다.

#### 제 11조 본 협정의 효력발생과 유효기일

1. 본 협정은 체약쌍방이 효력발생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는데 대한 최종서면통지를 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10년동안 유효하다. 만일 체약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정의 효력을 중지할데 대한 자기 의향을 해당 기일만기전 최소 12개월안에 체약쌍방에게 서면형식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본 협정은 5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본 협정의 효력증지전에 실현된 투자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효력이 중지된 날부터 본 협정의 1-11조 규정들이 10년동안 효력을 가진다.

본 협정은 2006년 8월 24일 평양에서 벨라루시어와 조선어,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원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 협정규정들의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로문에 준한다.

벨라루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